

공고번호 오산시청 2026-1774호

오산시청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 공고

오산시청 기간제 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오 산 시 청



1. 채용분야 및 근로기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	채용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구내식당 조리보조	2명	오산시청 구내식당	2026. 11. 1.~ 2026. 12. 31.	08:00~16:00	조리보조

2. 임금등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 1) 인건비 : 11,230원/(시간)/주5일 *2026년 생활임금적용
- 2) 1주일 개근 시 1일 주휴수당 부여
- 3)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4) 4대보험 가입(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 처리함.
- 6)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 7) 지급방식: 월급 형태로 익월 5일 이내 지급, 개인별 통장입금 원칙
- 8) 근무지 : 오산시청 구내식당

3.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1)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작업이 부적절한 자
- 2) 우리 시에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 등으로 해고된 경력이 있는자
- 3) 기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조리실

근무하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오산시 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사업과 근로계약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오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55세 미만 자로서 당해 공고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오산시에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바.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자

사. 건강진단서(구 보건증)발급 가능자

4. 채용일정

구분	전형일정	내용
채용공고	2026. 10. 20.(화) ~ 10. 27.(화) 16:00까지	- 시청 홈페이지 공고
서류접수	2026. 10. 20.(화) ~ 10. 27.(화) 16:00까지	- 접수처: 오산시청 구내식당 - 접수시간: 08:00~16:00 (점심시간제외)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026. 10. 27.(화)예정	- 개별문자 통보(16:00이후)
면접심사	2026. 10. 28.(수) 14:00 예정	- 면접장소: 오산시청 구내식당 (오산시청 지하 1층)
최종합격자발표	2026. 10. 28.(수)예정	- 시청 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고용개시일	2026. 11. 1.(일)예정	-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실시 및 근로계약 체결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 영양사(☎031-8036-7164)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응시원서 각1부(반명함판사진 첨부 2매) (붙임1,2)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3)

다.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 및 접수 기간 내 발급분에 한함)

라.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미제출 시 인정 불가)

마. 건강검진 확인서(구보건증) 1부

6.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1) 신청서 및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심사
- 2)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단,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원 선발)
- 3) 서류전형 심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나. 2차 : 면접전형

- 1) 평가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점정

다. 최종합격

- 1) 서류심사(30%)+면접심사(70%)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2) 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없음)
- 3)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자로 후보자 선출 가능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복무는 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나. 근무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함

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합격자는 제외)함.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 부담으로 반환청구 비용은 없음

라.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여, 이를 준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예비)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바.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사. 제출한 서류에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함

아. 오산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함

-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2)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 3)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자
- 4) 기타 오산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차.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구내식당 영양사(☎031-8036-7164)으로 문의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